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고 제2025-05호

2025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5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1. 최종합격자 : 3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인재원01	행정	3명	정○○ (인재원01-02)
			조○○ (인재원01-04)
			김○○ (인재원01-06)

2. 합격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대상 : 최종합격자 3명

○ 사전제출 서류

①주민등록등본 1부
②증명사진 파일(JPG)
③급여통장 사본 1부
④서약서(서식1) 1부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apex0619@korea.kr)로 제출

*** 제출기한 : ~ 2025. 8. 21.(목)**

○ 근로계약 예정일 및 출근일 : 2025. 8. 25.(월)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본관 1층 교육지원과로 09시 까지 출근**

○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상기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채용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선 연락(051-720-7723) 후 채용포기서 **[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 ☎ 051-720-7723

【서식1】

서 약 서

본인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 해양수산부 청년인턴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만일 이를 숨기거나, 허위 서류의 제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8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귀하

【서식2】

채용 포기서

■ 시험구분 : 2025년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년인턴 채용 시험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사정으로 인하여 청년인턴으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2025 년 8 월 일

성명 : (서명/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